

상품설명서(주거용)



First American
Title Insurance Company

[보험계약자용]

이 설명서는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설명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OOO 고객님의 위한

상 품 설 명 서

본 상품은 권리보험 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계약담당자: OOO



상담전화 02 - 3144 - 2483

2021.03.25 준법-2141-003 심의필

1. 보험계약의 개요

보험회사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 한국지점				
보험상품명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	보험개시일자	2000년 00월 00일		
보험계약자	홍길동	수익자	홍길동		
계약보험기간	소유권 취득 후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까지				
보험료	원	보험가입금액	원	납입방법	일시납
계약담당자	OOO (연락처: 02-3144-2483)				
피보험자	성명	사망보험금 수익자	기타보험금 수익자		
	홍길동	법정상속인	홍길동		
보험목적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아파트 제10동 제5층 제501호				

2. 보험 보장내역

□ 보상하는 손해

- 회사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아래 사유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어 발생하는 실제 손실 및 손해에 대해 보상하여 드립니다.

-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및 매도인의 신분증에 관한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초본 등)를 위조하여 임차권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기·강박으로 취득하거나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 또는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무능력(매도인 본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 의사 및 행위무능력) 또는 무권대리(매도인의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의 매도행위로 인하여 소유권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시까지 우선하는 권리(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등기부상 등록되는 권리)로 인하여 소유권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등기공무원의 등기 오류 및 하자있는 행정 절차에 따라 소유권에 발생한 하자, 또는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가 등기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등기업무 과정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소유권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소유권 방어 비용 부담

- 보상하는 손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보험의 목적인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 등은 약관 제12조에 따라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 한하며 또한 회사가 기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3. 보험계약자의 권리 · 의무

□ 보험계약자의 권리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약서에 명시된 **권리조사 비용(11,000원)을 제외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http://firstam.co.kr>)에서 청약철회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유선(☎ 02-3144-2483)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44길 41, 14층(마포동, 마포타워)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권리조사 비용 공제)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보험계약자의 의무

-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 포함)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부동산 매매(임대차)계약 상의 목적부동산의 표시, 매도인(임대인), 매수인(임차인), 선순위 권리 승계여부 등 합의한 권리제한, 기타 특이사항 등을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회사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4.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계약의 인수거절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권리조사 후 **보험회사가 인수 불가능한 권리**(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기입등기 등)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인수를 거절**합니다. 다만,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나, 계약자가 권리조사 결과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조사 비용을 제외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계약자는 동일한 위험으로 다른 회사와 권리보험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체결한 경우**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사항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위법계약의 해지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고,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손해의 통지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서 부보하는 소유권에 대한 하자, 제한, 부담 기타 사항에 대한 주장, 청구나 기타 불리한 주장이나 청구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
 2.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부보되는 손실 및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소유권에 관한 불리한 청구**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경우

□ 보험효력 발생의 전제 사항

-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를 전제로 증권발행일(확인서 발행일)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소유권 등기 예정의 경우, 잔금일에 반드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어야 보험효력이 발생합니다.

5.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 보험금의 지급

- 보험증권이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지급은 이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이루어 집니다. 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 그에 대한 증거가 회사가 수용할만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회사는 손실 또는 손해의 책임 및 범위가 이 약관에 의해 확정된 경우,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보상은 보험금 청구인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청구서 등 보험회사에서 정한 서류(매매계약서, 매도인 신분증 사본 필수)를 접수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관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6.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이 보험계약에 따른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유선(☎ 02-3144-2483)으로 문의할 수 있고, 이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회사와 피보험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분쟁은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 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7.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 동 보험계약을 가입하시면서 계약담당자에게 설명을 받으시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확인"란에 (v)표시를 해주세요.

	주요 내용	확인
1	보험회사 및 계약담당자에 대한 정보에 관한 사항 및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계약의 개요	
2	청약철회, 계약취소, 고지의무(타사가입사항 포함) 및 위반효과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의 보험료 및 보장내역	
4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 등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5	계약의 해지, 손해의 통지 등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6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7	상품설명서를 보충하여 약관 상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	

※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계약담당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 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계약담당자 확인란

- 계약담당자 ○ ○ ○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홍길동 님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 . . . 계약담당자 ○ ○ ○ (서명/날인)

☞ 계약자분께서 자필로 얇게 인쇄된 부분을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확인란

- 본 상품은 권리보험이며,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권리조사비용으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과 다른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계약담당자 ○ ○ ○ (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 본인은 권리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의 인수 불가능한 권리로 인하여 인수 거절됨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됨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제3조제4항제1호에 의거하여,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비보호대상에 해당되어 보호되지 않습니다.

20 . . . 보험계약자 홍길동 (서명/날인)

☞ 계약자분께서 자필로 얇게 인쇄된 부분을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 확인란(금융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금융정보취약계층(만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에 해당하시고 그 정보를 제공하기로 동의하신 고객께서는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해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다음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십니까? (√체크)

만65세 이상 은퇴자 주부 불이익사항 우선 설명 요청 고객

②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설명 들으셨습니까?

20 보험계약자_홍길동 (서명/날인)

☞ 계약자분께서 자필로 얹게 인쇄된 부분을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귀사에서 운영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 동의여부 (예 , 아니오)